

2022년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2단계-예술인(단체)] 주요 질의 응답(FAQ)

2022.5.30.(월)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본 사업은 데이터서비스(기술)를 활용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단계로 데이터서비스 제공 기업을 선정 후, 2단계 공모를 통해 기 선정된 기업과 사전협의를 거친 예술인(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데이터기업'과 '예술인(단체)'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단체)에게 기업의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며, 예술인(단체)은 기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의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은 그동안 예술활동에 기술을 접목하고 싶었으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예술인(단체)을 위해 역량 있는 데이터 기업을 소개하고,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예술인(단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 단체 또는 예술인 개인 자격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올해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이용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의 단체 및 개인에게 예술활동에 필요한 기술접근성을 높여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전협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전협약서」는 예술인(단체)과 기업 간 데이터서비스 거래 시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하여 예술인(단체)의 요구사항과 기업의 기술 구현 계획을 명시한 자료로서 **지원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술인(단체)은 공고문에 명시된 데이터서비스(8종) 중에서 자신의 예술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1개**를 **선택**하시어, 해당 기업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인(단체)이 선택한 데이터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결과물 제공 가능여부와 서비스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단체)—데이터기업 간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에 관한 협의 내용은 「사전협약서」에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요구기능과 반영 계획, 최종 산출물, 일정 계획, 사후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를 위한 **데이터기업 연락처는 공고문에 명시된 유선/이메일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공고문에 안내된 데이터서비스 중에서 골라야 하나요? 다른 기업과 매칭을 신청할 수 없나요?

예술인(단체)은 공고문에 명시된 데이터서비스 중 1개를 선택하여 매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은 1단계 공모를 통해 6개의 데이터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총 8건의 데이터서비스를 예술인(단체)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1단계 공모 선정 데이터기업 외에는 타 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단체)의 자율적인 기술 협업 지원은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기업 측에서 매칭 가능한 예술인(단체)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기업별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상이합니다.

사전 협의 시 기업이 제공 가능한 최대 매칭 건수를 확인하신 후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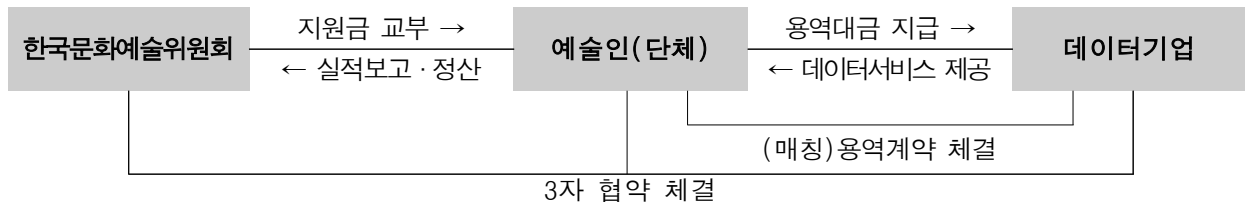
데이터서비스가 창작지원·향유확산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활동계획을 작성해야 하나요?

데이터서비스 설계 시 신규 데이터를 생산하여 작품 창·제작을 지원하면 “창작지원(데이터 생산)”,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 제작된 작품 확산을 지원하면 “향유확산(데이터활용)”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단체)은 기획하시는 예술활동에 맞춰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시고, 해당 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한 예술활동 계획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인(단체)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며, 예술인(단체)은 매칭된 기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때 예술인(단체)은 지원금 전액을 데이터기업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이외 인건비, 제작비 등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는 본인 부담인가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 환급 대상이므로, 교부 받은 **지원금으로는 부가세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공급가액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부가세는 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및 개인**의 경우 부가세 신고 및 사후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금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유형에 따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 시 "총소요액"과 "신청액"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유형 | 데이터서비스 금액 | | (NCAS) 총소요액 | (NCAS) 신청액 | (참고) 본인 부담액 <small>*사업비 편성 불가</small> |
|-------------------------|-------------|---|-------------|-------------|--|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20,000,000원 | ⇒ | 20,000,000원 | 18,181,818원 | 1,818,182원 |
| | 25,000,000원 | | 25,000,000원 | 22,727,273원 | 2,272,727원 |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미대상) | 20,000,000원 | | 20,000,000원 | 20,000,000원 | 없음 |
| | 25,000,000원 | | 25,000,000원 | 25,000,000원 | 없음 |

사업비 자부담이 있나요?

본 사업은 2022년 신규 추진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자부담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집행이 불가하므로, 부가세는 본인 부담 비용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단체) 선정 이후 의무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정 단계]

- (3자 협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단체)—데이터기업 간 책임 및 상호의무 규정
- (용역 계약) 예술인(단체)—데이터기업 간 데이터서비스 거래에 관한 용역 계약 체결

[결과보고 단계]

- (정산 및 실적보고서) 보조금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발생
- (성과공유회) 사업 수행 완료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의 성과공유회 참석 필수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데이터서비스 산출물의 저작권은 예술인(단체)에게 있으며, 향후 수익사업 추진 시 3자 협약 당사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단체)—데이터기업)와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데이터기업 협업 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인가요?

예술인(단체)과 데이터기업 간 매칭을 통해 예술활동에 필요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 받는 본 사업의 특성상 주체 간의 상호 협업체계가 중요하며, 이는 '추진계획 충실성'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데이터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략·체계, 전담인력,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협업에 임하는 각오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가 있나요?

2단계-예술인(단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번호 | 서류정보 | 구분 | 발급방법 |
|----|------------------------|----|---|
| 1 | 지원신청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 2 | 사전협의를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전협의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 3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별도 첨부 |